

태국의 공정거래법

본 협회 조사부

태국정부는 지난해 2월 사상 처음으로 체계화 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다음 내용은 공정거래제도에 관심있는 인사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동 공정거래법의 제정경위와 주요 내용을 요약 게재한 것이다.

1. 머리말

태국정부는 1947년 부당이득법(Profiteering Act)을 제정하고 동 법에 의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자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군사정권하에서 근대적 경제사회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한 운영실적은 거의 없다.

1970년대에 들어서 국민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인구증가에 따라 식품, 의료품, 주거 등 소비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수요의 증대로 인한 상품부족이 심화됨으로써, 시장에서 독점, 과점, 기타 불공정한 거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고, 공정한 가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1979년에 「가격통제및독점금지법」(Price Fixing and Antimonopoly Act, 이하 1979년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경제·사회체제를 반영, 부당이익의 배제를 위하여 가격통제에 주력한 면이 강하며 경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년간 제빙업계, 합판업계 등에서 수 건의 카르텔 금지명령이 발하여진 기록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1999년 4월에 신법이 시행될 때까지 소비생활필수품을 주 대상으로 22개 품목에 대해 가격감시와 가격표시의무가 부과되는 등 각종 규제가 행해졌고, 이 효과로 물가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 후 많은 국가들이 중앙통제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하게 되는 1990년대 초기부터 태국정부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1979년법의 개정 내지 신법의 제정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는데 따라서 시장지배력의 남용, 독점력을 이용한 할인경쟁, 동조적 가격인상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 중반부터 국내거래국은 새로운 경쟁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었다.

2. 경쟁법의 제정

1) 제정

태국의 신경쟁법은 사업경쟁법(The Trade Competition Act)이란 명칭으로 1999년 2월 국회를 통과, 국왕의 재가를 얻어 1999년 3월 31일이 고시한 후 4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법은 헌법 제50조(직업의 자유 및 자유경쟁의 확보) 및 제87조(자유경제제도 지원, 감독, 소비자보호, 독점방지)를 근거로 제정되었다.

2) 특징

신법에 대한 몇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가 경쟁법의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 둘째로 독립적인 법 운영기관을 계속 갖지 않도록 한 점, 셋째로 1979년의 「가격통제·독점금지법」이 통제대상품목을 중심으로 감시한 것과는 달리 신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 넷째로 적용제외규정을 두었다는 점, 다섯째로 피해자가 손해회복을 위해 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979년법에서 분리하여 사업경쟁법과 함께 제정된 「상품·서비스 가격법」(Price of Goods and Services Act)이 존치하고, 구법시대의 가격감시대상 22개 품목에 대한 가격감시제도는 그대로 운영토록 하였다.

3) 규제의 내용

신법은 「시장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Business Operator with Market Domination)의 행위, 합병 및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한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가. 불공정한 거래 규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다.

- (1) 불공정한 상품매매가격 또는 용역거래가격의 설정, 유지행위
- (2) 자기의 거래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의 생산, 매매 또는 용역의 공급·수주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구속조건의 설정, 행사행위
- (3) 상품의 생산, 매매, 위탁, 수입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시장수요에 하회하도록 공급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품을 훼손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사업자의 사업을 간섭하는 행위

시장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준은 고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불공정한 행위」 및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금후 법운용에 따를 구체적 사안을 기초로 검토를 계속, 타당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합병규제

합병규제에 대하여는 독점 또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자본액,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고시토록 하고 있다.

고시대상이 되는 기업결합행위에는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

- (1) 사업의 존속, 결합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제조업자간, 판매업자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 또는 서비스업자간의 합병
 - (2) 사업경영, 사업수행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타사업자의 전자산 또는 일부 자산의 매수
 - (3) 사업경영 및 수행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타사업자의 발행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취득
- 단, 상기 각 항의 활동(합병, 자산취득 및 주식취득) 결과, 독점 또는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경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사전신고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허가제도에 의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사전조사도 할 수 있다.

1999년말 과점상태에 있었던 해운업계의 대형합병의 경우 사전상담을 받았다.

다. 공동행위 규제

앞의 2가지 유형에 대한 규제보다 상세하게 규정된 부분이 공동행위규제 부분이다. 사업자간의 독점, 경쟁 감소 또는 제한을 가져오는 카르텔 행위로서 다음의 10가지 금지행위가 열거되어 있다.

- (1) 상품판매 또는 용역공급에 있어서 동일가격 또는 합의에 기초한 가격설정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제한하는 행위
- (2) 상품 또는 용역구입에 있어서 동일가격 또는 합의에 기초한 가격설정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량을 제한하는 행위
- (3) 시장점거 또는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
- (4)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지역 분할 및 공급거래처의 고정행위
- (5)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지역 분할 및 구입거래처의 고정행위
- (6)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시장수요량 이하로 억제하는 행위
- (7) 상품 또는 용역의 질을 저하시킨 후 종전 구가격 또는 인상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
- (8) 동일 또는 동종의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대상으로 특정사업자를 지정하는 행위
- (9) 동일 또는 합의에 기초한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조건 또는 방법을 설정하는 행위

상기 (1)~(9)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앞의 기업결합과 같은 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라. 기타 규제

시장점유율이 75%를 초과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점유율의 억제, 동결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4) 적용제외와 허가신청

가. 적용제외

다음기관의 행위 및 관계부처령에 기초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

- (1) 중앙국가공무원, 지방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공무원
- (2) 예산집행법에 근거한 국영기업
- (3) 법률에 근거 영업이익사업을 운영목적으로 하는 농민단체·협동조합
- (4) 운영적용제외를 정한 부령에 근거한 사업

태국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겸업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자도 있다.

전력, 전기, 전화, 창고, 수도 등의 국영기업은 정부감독하에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규제완화 내지 민영화가 기도되고 있다.

나. 허가신청

앞에서 서술한 기업결합행위 및 공동행위규제 가운데 (4)~(9)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고시된 양식, 규칙, 방법 및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동 허가신청서에는 반드시 ① 행위의 필요성, ② 실시방법, ③ 실시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사업경쟁법의 운용

1) 운용조직의 개요

사업경쟁법 운용기관은 사업경쟁위원회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상무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재무차관과 각의를 거쳐 임명된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유식자(정치가를 제외하고 과반수 이상은 민간출신자로 함)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1기에 2년이며 2기까지 재임할 수 있다.

1999년 10월, 새로운 위원 12명이 선임되었고 이 가운데 6명이 민간출신자로 되어 있다.

사업경쟁위원회 사무국은 상무성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거래국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국내거래국 직원은 지방직원을 포함 900명이며, 사업경쟁실 및 감시·심사과를 중심으로 경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 사업경쟁위원회의 권한

사업경쟁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가 되는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규정 등 운용상 기준이 되는 고시를 하고 가격협정 등 시장에 있어서 독점, 경쟁의 저하 또는 제한과 관련이 되는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

또한 위반행위내용의 검토, 허가신청내용의 심사, 기타 사업경쟁위원회에 요구하는 사안의 검토, 의견을 구하기 위한 전문소위원회와 경찰 및 검찰관계자를 위원에 포함 위반사건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소위원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부터의 불복신청에 대하여 심의·검토하는 불복신청심사위원회 등 3개의 하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경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보완하고 있다.

3) 규제절차

조사절차와 요령의 상세한 규칙으로는 고시 및 위원회 규칙이 있으며 크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 또는 직권조사에 의한 피의행위 내용, 사업의 상태 등의 조사가 국내거래국에서 개시된다.

조사의 결과 독점, 경쟁제한행위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사업자 및 조사관을 출석시켜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 조사소위원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경쟁위원회가 위반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위반의 사실, 대상이 되는 조항, 명령의 내용·이유 등을 제시한 후 이러한 행위의 억제, 유지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명한다.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강구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거부하고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경쟁위원회는 불복신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의 결과 증거, 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심리를 행한다. 불복신청심사위원회의 판정은 사업경쟁위원회의 최종결론이 되고, 사업자는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후속조치로 재명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된다.

한편, 공정거래나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경쟁위원회는 검찰청에 제소할 수 있다.

태국은 3심제로 되어있다. 사업경쟁법 위반행위는 제2심인 항소법원에서 재판이 개시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문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정**